

# 심사보고서

2024. 4. 24.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34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이도희 의원 대표발의(8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이도희)

가. 제안이유

- 기존의 입시지원 외에 새로운 교육과정에 발맞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평생교육으로 강남인강의 기능적 범위를 확장하고, 나눔교육 정책 실현을 위하여 회원가입비 감면 대상 추가 및 친선·우호 도시 대상 단체수강권 할인 조항을 신설하여 강남인강의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능 조정 (안 제1조, 안 제3조)
- 회원가입비 면제 및 단체수강권 할인 대상 추가 (안 제4조, 안 제5조)
-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조정 (안 제7조)
-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0조, 안 제11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본 안건은 나눔교육을 실현을 위하여 강남인강의 기능적 범위를 확대, 회원가입비 감면대상의 추가, 친선·우호도시대상 단체수강권 할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강남인강은 2004. 6. 1. 개국하여 현재까지 많은 중·고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방 또는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역적 거리를 넘어 서울과 동일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여 왔으나 교육방송 등의 출현으로 과거의 운영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전환하여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강남인강 맞춤형 강좌 추천 시스템 기능 강화로 자기주도형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소통형 교육서비스 제공, 전국 저소득층 학생 무료수강권 발행 및 장학생 선발 등 교육 나눔정책 지속 실현, 관내 학교 대상 학습설명회, 온·오프라인 홍보강화로 회원수를 증대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 안 제5조(단체수강권 할인)에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강남인강과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친선·우호도시까지 할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예시><sup>1)</sup>와

---

1) <예시>

2. 친선·우호도시 중 강남인강과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도시에서 구매한 경우

같이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명확해 보임. 또한 제5조의 제목을 ‘단체수강권 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4조제4항에서 감면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 ‘할인’ 보다는 ‘수강료 감면’으로 하고 본문과 단서 중 ‘할인’을 각각 ‘감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등)에서는 자문기관의 명칭을 강남인강 자문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조례<sup>2)</sup>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인강자문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위원회 자문내용이 기존에 구체적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강사선정, 교재선정 등 기존의 자문 내용도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심의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콘텐츠를 확대·제공하고, 자기주도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기반을 마련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강남인강의 기능범위, 회원가입비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자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강남인강 활성화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2)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34호

제안일자 : 2024.4.24.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 1. 수정이유

- 본문과 단서에서 동일한 의미의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2. 수정주요내용

- 용어 수정(안 제5조)
- 자문기관 명칭 수정(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인” 을 각각 “감면” 으로 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남인강 자문위원회” 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인강 자문위원회” 로 한다.



3. 나눔의 정책 실현

제4조(회원가입비)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

9. · 10. (생략)

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및 나눔교육 정책 실현

제4조(회원가입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8. -----  
-----  
----- 아동·청소년

9. · 10.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제4조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9. · 10. (현행과 같음)



트를 할인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특별프로그램) ① 강남인강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벤트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우수회원 또는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등) 강남인강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남인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문을

-----.

1. 강남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구매한 경우

2. 강남인강과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친선·우호 도시에서 구매한 경우

제7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강남인강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및 행사, 홍보 마케팅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  
-----  
-----.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등) -----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7조(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등)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인강 자문위원회-----  
-----.

한다.

1. 사업계획

2. 장학생 평가방법 및 기준

3. 강사 선정

4. 교재, 부교재 선정

5. 회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

1. 효율적 운영방향 및 교육콘텐츠 구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심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3. 회원유입 활성화를 위한 -----

4. ----- 필요로 하는 ---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  
-----  
-----  
-----  
-----  
-----  
-----  
-----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제11조(개정안과 같음)

<p>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후단 신설 2013.11.1.&gt;</p> <p>1. <u>인터넷방송</u>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p> <p>2. ~ 4. (생략)</p> <p>② ~ ③ (생략)</p>	<p>-----</p> <p>1. <u>인터넷 교육</u> -----</p> <p>-----</p> <p>-</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1.(개정안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조 중 “「교육기본법」 제5조”를 “「교육기본법」 제4조”로 한다.

안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인터넷 교육강의 제공
2. 진로진학·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및 나눔교육 정책 실현

안 제4조제3항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아동”을 “아동·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

안 제5조의 제목“(단체수강권 할인)”을“(단체수강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할인”을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강남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구매 시”를 “각 호의 경우”로, “할인할 수 있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강남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구매한 경우
2. 강남인강과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친선·우호 도시에서 구매한 경우

안 제7조의 제목“(특별프로그램)”을“(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프로그램운영에 따른”을 “제1항에 따라 선정된”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강남인강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및 행사, 홍보 마케팅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남인강 자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인강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회원확보”를 “회원유입 활성화를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필요로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

1. 효율적 운영방향 및 교육콘텐츠 구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심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항제1호 중 “인터넷방송”을 “인터넷 교육”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교육기본법</u>」 제5조 및 제23조, 「<u>평생교육법</u>」 제5조 및 제33조에 따라 누구나 교육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능) 강남인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u>중·고등 성적향상 및 입시를 위한 인터넷 강의</u></p> <p>2. <u>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보완</u></p> <p>3. <u>나눔의 정책 실현</u></p> <p>제4조(회원가입비) ①·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가입비를 면제할 수</p>	<p>제1조(목적) ----- 「<u>교육기본법</u>」 제4조 ----- ----- ----- ----- ----- ----- ----- ----- -----.</p> <p>제3조(기능) ----- -----.</p> <p>1. <u>학력 향상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인터넷 교육강의 제공</u></p> <p>2. <u>진로진학·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u></p> <p>3. <u>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및 나눔교육 정책 실현</u></p> <p>제4조(회원가입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있다.

1. ~ 6. (생략)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

9. · 10. (생략)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신설>

12. (생략)

④ · ⑤ (생략)

제5조(단체수강권 할인)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30명 이

1. ~ 6. (현행과 같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8. ----- 아동·청소년

9. · 10. (현행과 같음)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단체수강권 감면) -----  
-----

상 구매 시 금액의 1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강남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구매 시에는 인원 제한 없이 4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특별프로그램) ① 강남인강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벤트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우수회원 또는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등) 강남인강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남인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문을 한다.

1. 사업계획
2. 장학생 평가방법 및 기준

----- 감면-----  
---. ---- 각 호의 경우-----  
----- 감면할 수 있다.

1. 강남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구매한 경우
2. 강남인강과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친선·우호 도시에서 구매한 경우

제7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강남인강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및 행사, 홍보 마케팅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  
-----.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등)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인강 자문위원회-----  
-----.

1. 효율적 운영방향 및 교육콘텐츠 구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심의, 평가 및 점검,

3. 강사 선정

4. 교재, 부교재 선정

5. 회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하  
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  
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  
성)이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후단 신  
설 2013.11.1.>

1. 인터넷방송 관련 경험과 식  
견을 갖춘 전문가

2. ~ 4. (생략)

②·③ (생략)

보고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3. 회원유입 활성화를 위한 ---  
-----

4. ----- 필요로 하는  
---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  
-----  
-----  
-----  
-----  
-----  
-----  
-----  
-----  
-----

1. 인터넷 교육 -----  
-----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